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040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8.

발 의 자 : 권성동 · 이종명 · 권석창

김상훈 · 박명재 · 염동열

경대수 · 이완영 · 신보라

정갑윤 · 곽상도 · 박덕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‘특정범죄’의 적용범위는 강력, 마약범죄, 조직범죄 등 전통형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뇌물죄 등 부패범죄, 업무상 횡령 · 배임 등의 기업범죄 등 이른바 ‘현대형 범죄’의 경우, 내부신고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‘특정범죄’의 적용범위에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,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죄 및 「형법」 제114조(범죄단체조직죄), 제289조(인신매매죄)를 추가하고자 함(안 제2조).

또한, 현행법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면서도 불이익처우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.

이에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과 마찬가지로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

익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,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 제17조제2항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하고자 함(안 제17조).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

아.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죄

자. 「형법」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벌칙) ①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특정범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.</p> <p> 가. ~ 바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.</p> <p>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사.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.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죄 자. 「형법」 제114조의 범죄 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7조(별 칙)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</p>	<p>제17조(별 칙) ①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

②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
하의 벌금에 처한다.